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임종국 의원입니다.

○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

강한 규제로 한옥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(리모델링)의 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받는 반면,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환경소음, 쓰레기, 사생활 침해 등 그 피해가 커 한옥 건축 및 수선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그 지원 범위를 넓이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한옥건축양식의 경우 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(한옥보전구역은 제외) 하고,

○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옥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